

의안번호 제72호

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			
제출연윌일	2017. 9. 8.			

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72호

제출연월일: 2017. 9. 8. 제 출 자: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『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』제4조의2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O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.

2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.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.

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가) 예고기간 : 2017. 07. 28. ~ 08. 18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.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 실과 : 경제산업실(041-635-2223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2 중 "2017년"을 "202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		성		码
٨١	사회	적경제	과장	김	ල්	민
입 안 자	기 업	지 원	팀 장	류	상	선
	담	당	자	백 (74	설 6-60	영 42)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	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
존속기한은 <u>2017년</u> 12월 31일까지	<u>2022년</u>
로 한다. 다만, 기금의 존속기한이	
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	
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	
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.	

붙임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제4조의 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2. 비용 추계 결과(2017년 기준)

- O 제17조 결산 및 보고를 위해 융자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회 수당 발생으로 추계
 - 100,000원 × 3명 = 300,000원/년간
 - 300,000원/년간 × 5년 = 1,500,000원

3. 작성자

사회적경제과장 김 영 민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		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계 계
세		입						
지	방	세						
세		ځ	300	300	300	300	300	1,500
201-01사무관리비 위 원 회 수 당		비당	300	300	300	300	300	1,500
	원 조	달	300	300	300	300	300	1,500
의존	소	계						
기는 기자원	보조금(시	비)						
세원	지방교부	세						
자체	소	계	300	300	300	300	300	1,500
^r세 수입	지 방	세	300	300	300	300	300	1,500
一一百	세외수	입						
지	방	채						
7]		급						
공기	업 특별회	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	

참고 1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 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제62조의17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- 2.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
- 3.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
- ② 정부는 시·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·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참고 2

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

구 분	성 명	소 속	직 위 (연락처)	비고
계	9명			
위 원 장	홍 성 목	논 산 시	부 시 장	
부위원장	서 형 욱	논 산 시	행 복 도 시 국 장	
위 원	박 승 용	논 산 시 의 회	산 업 건 설 위 원 장	
	지 우 진	KEB하나은행	논 산 지 점 장 (741-1111)	
	권 용 근	NH농협은행	논 산 시 지 부 장 (735-2042)	
	이 경 배	논산시기업인협의회	기 업 인 협 의 회 장	
	전 민 호	논 산 시	예 산 담 당 관	
	진 용 민	논 산 시	세 무 과 장	
	김 영 민	논 산 시	사 회 적 경 제 과 장	
간 사	류 상 선	논 산 시	기 업 지 원 팀 장	